

- 농어촌도로 설206호선(창하선) 확포장공사 -
보상계획(열람) 공고

가평군에서 시행하는 『농어촌도로 설206호선(창하선) 확포장공사』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1월 22일

가 평 군



1. 공익사업의 개요

- 가. 사 업 명 : 농어촌도로 설206호선(창하선) 확포장공사
- 나. 사업시행자 : 가평군수(건설과)
- 다. 사 업 기 간 : 착공일 ~ 2024. 12. 31.
- 라. 사 업 내 용

공사명	사업량		사업의 위치	편입토지	편입물건
	연장(km)	폭원(m)			
농어촌도로 설206호선(창하선) 확포장공사	2.5	8.5	기점 : 가평군 설악면 창이리 177-5 종점 :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297-5	"불임" 토지조사 참조	위 토지상에 정착된 물건일체

2. 편입 토지 및 물건의 내역

- 가. 토지(물건)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열람 장소에 비치
- 나. 가평군청 홈페이지(www.gp.go.kr) 고시공고란에 게재

3. 보상시기

-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보

4. 열람 및 이의신청

- 가. 기간 : 2021. 11. 22. ~ 2021. 12. 6.
- 나. 장소 : 가평군청 건설도시국 건설과(☎031-580-2427)
- 다. 방법 :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 중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(우편송부 가능)으로 제출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보상절차 : 보상계획(열람)공고 → 감정평가 → 보상액 산정 → 손실보상 협의 → 보상금 지급
※ 등기이전 후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 현금 지급

나. 보상액의 산정

- 감정평가업자 3인(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·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)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하며, 영농손실보상액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8조에 의거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.

다. 보상금의 지급

-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청구에 의거 보상
- 물건(지장물), 영농손실 등의 경우 해당 토지 보상 이후 또는 동시에 청구에 의거 보상
- ※ 단, 토지 및 물건에 설정된 권리(근저당권, 지상권, 압류, 가압류)는 해지한 후 계약체결

6. 감정평가업자 추천
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68조에 따라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,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여야 합니다.

7. 기타사항

- 가.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(물건)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(물건)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.
- 나. 이 보상계획은 토지(물건)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,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 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(물건)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
- 다.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시설팀(☎031-580-242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